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행하는 논문집 「문화정책논총」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인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 1) 연구원 내부 위원은 해당 실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 2) 연구원 외부 전문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편집위원인 자로, 위원회 호선으로 정한다.
 - 1)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5. 위원회에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간사)를 둔다.

제3조 (기능 및 권한)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정책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문화정책논총」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기획·편집한다.
3.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회의)

1. 편집위원회는 「문화정책논총」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사항은 연구원 규정에 의거한다.

「문화정책논총」 논문작성 규정

제1조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 단면으로 작성한다.
2.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로 하며, 전체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3. 논문 구성은 제목, 필자명,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3매 이내, 키워드 5개 내외 포함),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영문초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4. 개별 게재논문의 표지에는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5.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6. 본문의 체제는 ‘서론 / 본론 / 결론’이나 ‘장, 절’ 등을 쓰지 않고 I → 1. → 1) → ①의 순서로 한다.
7.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와 외국어로 된 용어, 인명, 지명 등은 한글로 적고 처음 나올 때에 한해 ()안에 같이 적는다.
8.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메일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송: yunmi@kcti.re.kr
 - 2) 우송: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3동 827번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 앞
9.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연구원 측의 내용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10. 원고 작성의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 용지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용지여백	위쪽	30	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아래쪽	30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0	간격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0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2		문단아래	0			
	꼬리말	12	첫째줄	들여쓰기	3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날말방식	0			

제2조 (본문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 강내희(1985)의 연구에서도 …; 김창식·안문훈, 1989:79)은…; 이종석 등(1990: 410-412)이 제시한…; 토마스(Thomas, 1976: 900)의 모형을 수정하여 …; …황(Hwang, 1987)을 들 수 있다.;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 브라운 등(Brown et al., 1982)을 중심으로…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예)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동석, 1990 ; 이정서 등, 1990: 410-412 ; 김창식·안문훈,1989: 79 ; 신문섭, 1985);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예: Perry & Wise,1990 ; Hwang,1987; Brown et al, 1982 ; Thomas, 1976: 90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주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제3조 (참고문헌)

1. 일반적인 사항
 - 1)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2)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 (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 (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3)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 표기를 할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예) 吉澤 清-(요시자와 키요요시)(2007),
 - 4)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이상 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 (1999b)
 - 5)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行)부터는 3 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 6) 저자가 1~5명인 문헌은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저자가 6인 이상일 때는 ○○○ 외,○○○, et al. 로 표기한다.
예) 김문환 외(1990), Gibbon, et al.(1983),
 -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밝힌다.
단, 인용 문헌에서 Anonymous라고 된 것은 이것을 저자로 간주한다.

- 8) 만일 주 저자 다음에 with와 더불어 다른 이름이 열거된 문헌 (예, Kuan- Hsing Chen with Hsiu-Ling Kuo, Hans Hang, and Hsu Ming Chu)은 참고문헌에서는 이름을 모두 열거한다. 단,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주 저자 이름만 밝힌다.
- 9)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쓴다.
- 10) 발간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 라고 쓴다.

2. 논문

1) 학술지나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예

예) 임학순(2004),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전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집 2호, 305-324.

홍길동·이몽룡(1990), 문화와 관광, 「문화관광」, 34권 2호, 78-91.

Knapp, M., Ellis, D., & Williams, B.(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Scott, W. A.(1950),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The case of nominal scaling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1(3), 79-91. (* 저널명, volume은 이탤릭체로 처리)

Glaser, R., & Bond, L. (Eds.).(1981), Testing: Concepts,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36(10). (* 저널 특별호 전체를 표기할 때).

단,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저자/연도 다음에 발간 월이나 계절을 표기한다.

예) Austin, J. E.(2003, September), 홍길동(2003, 가을)

2)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예

예) 홍길동(1990), 미디어 문화정책의 전망, 홍길동·이몽룡(편), 「미디어문화정책론,45-66, 서울: 한울아카데미. Berger, C. R.(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39-62, Newbury Park, CA: Sage.

3.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 출판사 사항을 표기할 때 미국 출판사 출간도서는 ‘출판사 소재 도시, 주: 출판사’, 미국 이외 국가 출판사 출간도서는 ‘도시, 국가: 출판사’, 널리 알려진 대도시 소재 출판사 출간도서는 ‘도시: 출판사’ 순으로 한다. 이 때 주(state) 이름은 약자로 쓴다(예: CA, NY, IL). 출판된 도시가 둘 이상 일 때에는 가장 먼저 나온 것만 표시한다.

예) Hillsdale, NJ: Erlbaum.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Amsterdam: Elsevier.

* 출판사 이름에서 Books, Press 등은 밝히나, Publishers, Co., Inc. 등은 생략한다.

1) 단행본의 예

- 고정민(2007), 「문화콘텐츠 경영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홍길동·이몽룡(편)(1995), 「문화예술정책 연구」, 서울: 새나라.(공편저일 때)
Fiske, J.(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 ledge.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Y: Harper & Row.(공저일 때)
Gibbs, J. T., & Huang, L. N.(Eds.)(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공편저일 때)

2) 보고서의 예

- 조현성(2007),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 학위논문의 예

- 홍길동(2000),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Ryerson, J. F.(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4. 번역서나 번역논문

* 번역서는 한글 번역서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혀준다.

1) 번역서의 예

- Illich. I.(1996), *Deschooling Society*, 심성보 역(2004), 「학교 없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미토.
Laplace, P. -S.(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F. W.Truscott&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Original work published 1814).

2) 번역논문의 예

- Hall, S.(1996),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203-232, 서울: 한나래출판사(원저 출판연도 1980).
Freud, S.(1961), The ego and the id.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9, 3-66),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23).

5. 신문·잡지기사

- 홍길동(2002. 6. 28),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매일신문」, 5.

문화예술을 말한다(2001. 9. 1), 「한국매일신문」, 1. (*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Gardner, H.(1981, September),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70-76.(잡지 기사일 때)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1982, April 15), *APA Monitor*, 14.(신문기사일 때)

6.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맨 끝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둔다.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접속일자를 밝힌다.

예) Author, I.(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On-line], 호수, Available: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7. 시청각 자료(영화, TV프로그램, 음반, CD-ROM 등)

Harrison, J.(Producer), & Schmiechen, R.(Director).(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Film]. (NY: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Executive Producer).(1993, October 11), *The MacNeil/Leher news hour*.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

8. 기타

1) 표나 그림의 제목은 세분화 없이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 중앙에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 :’라고 표시하고 본 책자의 인용 요령에 따라 표나 그림의 아랫부분 왼쪽에 위치하게 표기한다.

2) 표나 그림에 대한 註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일반주(‘주 :’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아랫부분에 달아 준다. 그림에 대한 註도 이에 준한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자료,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이 되도록 배열한다).

예)

<표 2> ○○○

구 분	○○○	○○○	○○○

자료 : Duncan(1981:349)a)의 재구성
a) ○○○○○○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하고, 다양한 도식, 화살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체를 묶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시킨다.

-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PA) 양식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으로,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 (논문투고 자격)

1. 논문 투고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4.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논문 게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발행 일자)

「문화정책논총」은 매년 2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 1호 : 1월 31일
2. 2호 : 8월 31일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정책논총」 심사 규정

제1조 (심사 기준 및 절차)

1. 심사위원은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연구 목적의 명료성,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연구의 체계성, 논문의 독창성, 연구 결과의 의의(학문적 기여도, 실용적 기여도),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를 평가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유형 번호	심사위원 평가 결과				최종 판정 결과	판정 기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1	3				게재 가	2명 이상이 '게재 가'로 평가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가 없는 경우
2	2	1				
3	2		1		수정 후 게재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4	2			1		
5	1	2				
6	1	1	1			
7		3				
8		2	1			
9		2		1	수정 후 재심사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불가가 1명 있는 경우
10	1	1		1		
11	1		1	1		
12		1	1	1		
13	1		2			
14		1	2			
15			3			
16			2	1	게재 불가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17	1			2		
18		1		2		
19			1	2		
20				3		

*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판정의 심사위원 수

3.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소정의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게재'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4.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1. 투고된 논문은 각 논문당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은 반드시 논문심사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4. 논문을 투고한 자는 해당 호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5.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논문 심사 및 이월심사)

1. 기획논문, 특집논문, 일반논문의 경우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2.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원고마감일 이전에라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마감일을 넘겨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심사한다.

제4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게재가 불가능함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기존에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분량, 형식, 논문 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논문
- 논문 분량: 총 원고 분량 150매(표, 그림 포함). 단, 표, 그림의 경우는 세로 1cm 당 70자로 계산함.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단, 「문화정책논총」 게재 논문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특별기고논문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기획초청논문

제5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된 후에 투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 완료일, 그리고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 (수당) 심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중전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이 지침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정책논총」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정책논총」에 연구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및 출판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문화정책논총」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와 투고된 연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윤리)

1. 「문화정책논총」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다음 제2항에 열거된 바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이 규정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 규정에서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이 규정에서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이 규정에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 규정에서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 5) 이 규정에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이 규정에서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으로 본다.

3.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나 이중투고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히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심사자의 윤리)

1.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은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 전문연구자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윤리위원 외 위원회 운영간사 1인을 선임한다.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3. 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 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2.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 2) 논문이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 3) 논문이 이미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문화정책논총」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 4)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 금지
 - 5)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문화정책논총」에 위반 사실을 공지
3. 위원회는 조사·심의결과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10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1.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 조치 판정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통보 받은 즉시 제재 조치의 내용을 부정행위자에게 통지하며, 판정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2. 부정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1.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2.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